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 범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수신처참조

참 조 보험(원무)부서장

제 목 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호-103호(2016. 3. 22.)

2. 위 근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6조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(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-74호, 2016. 5. 24.)를 붙임과 같이 개정·발령했기에 안내합니다.

○ 주요사항

가. 신설

- 본인일부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 신설(별지1)
- 비급여 품목 신설(별지2)
- 행위료 포함 품목 신설(별지3)
-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품목 신설(별지7)

나. 변경

- 상한금액 조정 등 변경(별지4)
- 제조사 등 변경(별지6)
- 원가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(별지8)

다. 삭제(별지5)

※ 시행일 : 2016년 7월 1일

(단, 별지5는 별지에 기재된 각 일자 적용 및 별지8은 2016년 12월 1일 시행)

붙임 : [고시 제2016-103호] 개정문

※ 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(www.kha.or.kr) 메뉴상단 협회업무 / 보험국 공지사항에
 서 내려 받으시기 바랍니다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수신처

전국 병원장

사원 김재현 팀장 정윤학 국장 류항수

시 행 : 보험 제 2016-330 (2016.06.24)

우편번호 04165 서울 마포구 마포동 현대빌딩13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5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kjh@kha.or.kr